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2023. 3.

미래유치원

목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I. 학교안전계획 개요	1
1. 학교 현황	1
2. 학교 안전 조직	2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5
II. 학교안전 현황	7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7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10
III.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13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13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14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18
IV.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20
1.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20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21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22
참고 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3
참고 2. 20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26



1 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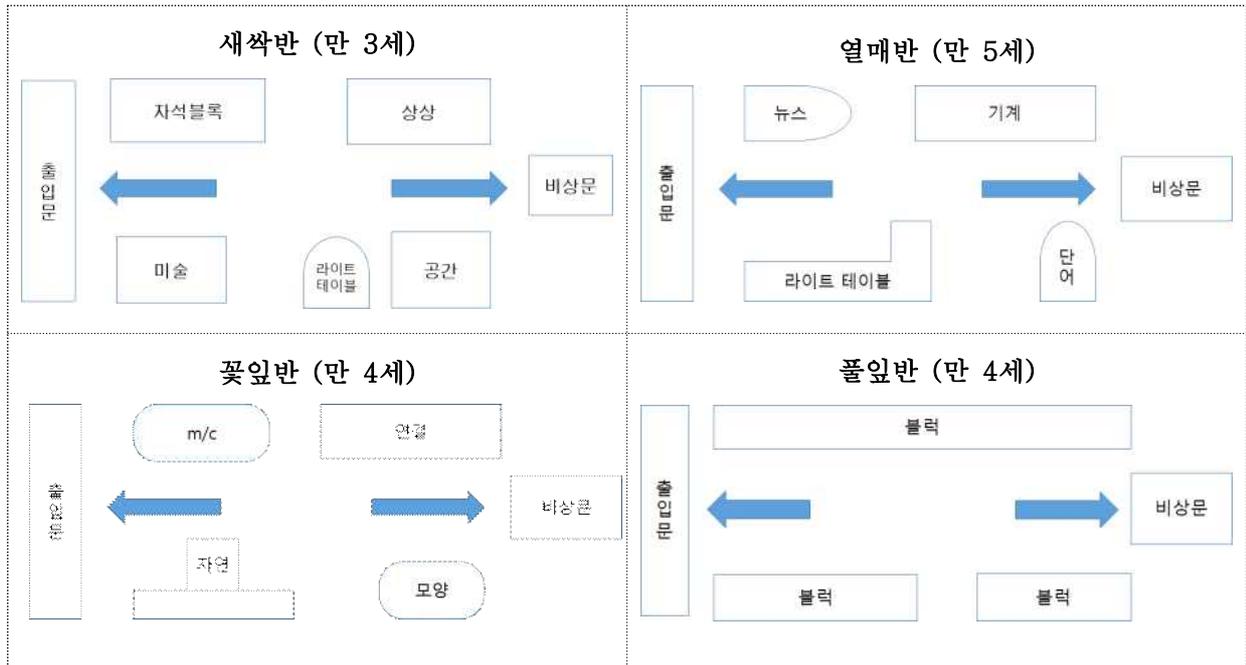
일반 현황

학교명	미래유치원	설립	사립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길 28 미래유치원		
전화	02-2662-1160	홈페이지	www.미래유치원.com
학교안전책임관(교장)	이희영		

학생 및 교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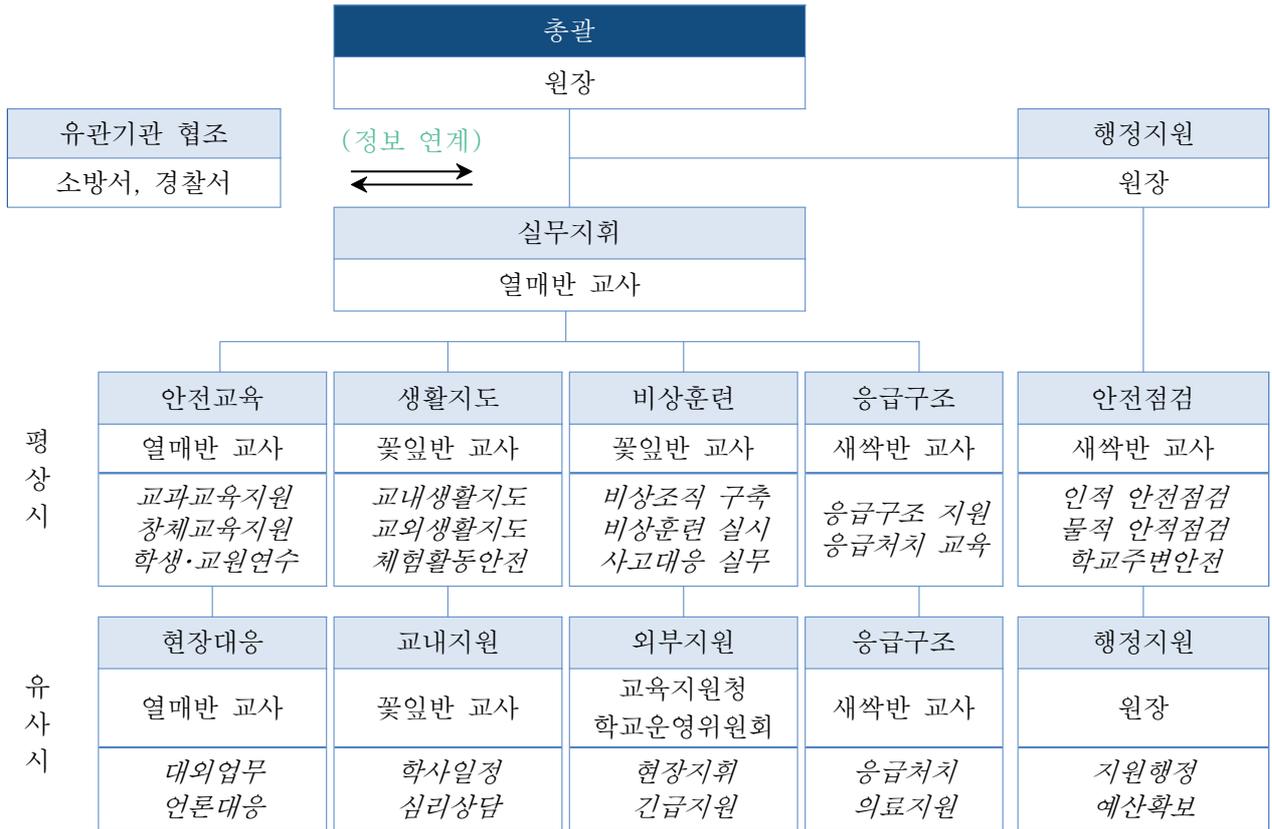
학생 (명)	만 3세	만 4세	만 5세		합계	
	14	28	19		61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급식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7	1	2	0	2	12

비상대피안내도



2 학교안전 조직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학교안전 관련 업무분장

- 학교안전 업무는 각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교직원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담당부서	관련 업무
미래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지휘 ○ 안전교육 ○ 유사시 현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 ○ 비상훈련 ○ 유사시 교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 응급구조 ○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 외부지원

🔍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 응급구조 체계 조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



🔍 유관기관 협조 체계

- 안전교육, 안전점검, 비상훈련, 사고구조, 사고복구 등 일련의 학교안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사전에 구축

구분	A 소방서	B 경찰지구대	지역/유관기관
담당자명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담당업무	개화119안전센터	방화3과출소	안전관리과
Tel	02-6981-5185	02-2663-1121	02-2600-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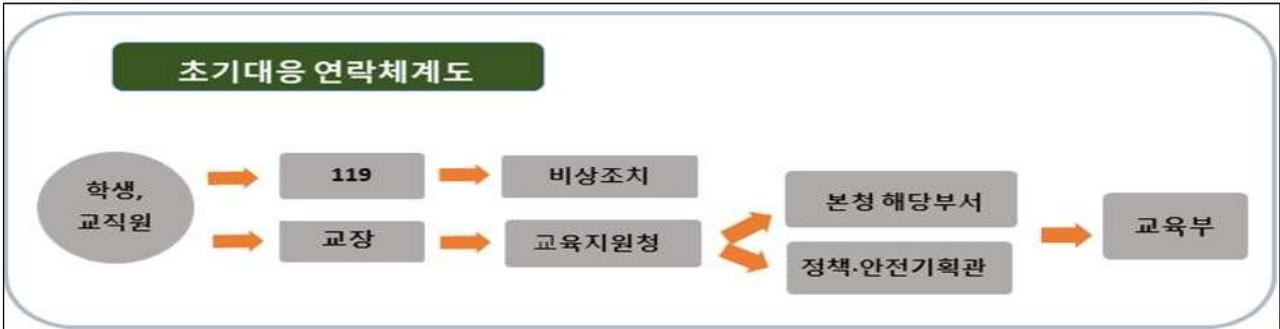
🔍 학교안전계획(공개용) 학교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미게시
○	

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학교 안전사고 보고 체계

○ 재난 대응 체계



구분	역할
학생	- 119 신고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교직원	- 119 신고 및 학교장에게 연락
교장	-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 연락
교육지원청 및 본청 사업부서	- 정책·안전기획관에 재난상황 보고 - 피해 복구를 위한 실무 수행방안 강구 및 실행 - 피해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재난상황 대응 - 재난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시 상황관리전담반 구성·운영
정책·안전기획관	- 재난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재난현황 실시간 관리 - 규모별 상황관리전담반 구성 지시(교육지원청 및 본청 사업부서) - 재난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시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재난 및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

- 학교(기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최초보고 시 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보고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상황보고에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 (보고 대상)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 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 현장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 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1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현황

- 학생과 교직원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함.
-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함.

🔍 전년도 학교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2년)

예시 서식

연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A)	교원	직원	계(B)	이수율(B/A)×100
2021.3. ~ 2024.2	2021	5	5	10	5	5	10	100
	2022	6	4	10	6	4	10	100
	2023				-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 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포함, 교육활동참여자 제외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2022년)

- 학생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실시 유무

실시	미실시
○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율

교육대상 교직원 수(명) (A)	교육실시 교직원 수(명) (B)	실시 비율(% (C=B/A)
10	10	100

관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

○ 안전·교육과정 영역별 학생 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2022년)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시간 안전영역(필수이수시간)	교과		이수시간 계
	1학기	2학기	
생활안전(13)	13	2	15시간
교통안전(10)	4	6	10시간
폭력 및 신변보호(8)	4	4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10)	6	5	11시간
재난안전(6)	12	6	18시간
직업안전(2)	1	1	2시간
응급처치(2)	1	3	4시간
계(51)	41	27	총 68시간

관련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

○ 2022학년도 재난대비훈련 실적(실시 횟수)

구분	재난대비훈련 유형						
	화재		지진	방사능재난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타재난	
	자체	합동				횟수	비고 (유형)
훈련 실시 횟수(회)	3	1	3	1	1		

○ 2022학년도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실적('23. 2월말 기준)

－ 체험 중심 학교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교육 내실화 목적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중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사용 비율 증대

－ 2022학년도 학생안전체험교육비는 통합교부사업비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교부되었음

* 관련: 2022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제출 요청(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활성화 집행실적 포함)

(정책·안전기획관-13865, 2022. 12. 7.)

편성	미편성
○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 편성 후 추경으로 삭감시 집행액이 있으면 편성, 집행액이 없으면 미편성으로 간주

교부액 (A)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집행액 (B)	기자재 구입 관련 집행액 (C)	불용액 (D)	학생안전체험교육 관련 사용 비율(% (E=B/A)
500000	528000			105.6

* A=B+C+D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미편성시 미작성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미교부 학력인전평생교육시설학교(학평)은 미작성

예시

•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안전체험관 이용 등 안전체험(VR 포함)교육비, 체험관 버스비/간식비, 체험강사비, 교재비 등 학생안전체험 관련 직·간접 운영비

• 기자재 구입: CPR마네킹, 화재대비재난마스크, 물소화기 등 물품 구입비

2 학교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학교안전사고 현황(2022년)

- 학교안전사고 ‘현황 없음’

🔍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2022년)

- 학교안전 실태조사 주요 결과표

조사대상	구분	비율조사 대상률	조사대상 인원	조사결과 인원
학교안전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952	95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52	5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900	900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학교안전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학교안전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12	12

- (학교안전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대부분 항목에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음

🔍 조치 계획

- 교육청 협의 사항

-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교육지원청(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보고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사항

- 유치원·유관기관과의 안전망 구축

- 학교 자체 계획

- 유치원 안전계획 수립·운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유치원 안전 확보



1 안전한 학교 특색사업

※ 학교 안전을 위해 지역 여건, 학교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학교별 특색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원 안전계획 수립·운영함
- 유아, 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함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실내외 시설 및 설비 점검
 - 통학버스 수시/정기점검
 - 정기방역
 - 안전교육 실시(유아/학부모/교직원)

추진일정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재난대비 비상훈련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개학식 학교안전계획 작성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미세먼지 교육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4월		현장체험학습	화재 안전교육	항사·미세먼지 훈련
5월	소운동회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화재 훈련 (소방서 합동 훈련)
6월			물놀이 안전 예방 지도	
7월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8월	개학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 지도	
9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10월		현장체험학습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훈련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11월			화재 예방 지도 강화 미세먼지 교육	
12월	겨울방학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1월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교육	
2월	졸업식, 종업식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화재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이○○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지진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이○○	
5월	화재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이○○	소방서 합동
9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현장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이○○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이○○	CPR
11월	지진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이○○	

※ 학교 재난 대비 훈련 담당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을 책자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 (담당자: 이○○ / 매뉴얼 위치: 교무실)

관련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의2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교육부, 2022)

🔍 통학차량 안전관리

- 통학버스 운영기관은 매일 통학차량 운영 전·후로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표*등을 작성·보관
 - * 타이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차량 안전운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매일 점검하며, 점검서식은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기관*은 안전운행기록을 분기별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제출(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통학버스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에 통학버스 등록 및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항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치

🔍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지원 계획

- 안전약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함.
- 신학기 건강조사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안전한 원생활을 돕고, 응급상황 예방과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다중밀집 행사 실시에 따른 인과사고 예방계획

- 다중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과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 소운동회, 원 행사, 졸업식, 현장학습 등
-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실시

• 다중밀집 인과사고 예방교육

- 학교 축제, 체육대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졸업여행,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학생·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회 및 현장체험 등 실시 전 안전교육 실시 계획

- 현장체험학습 전, 어린이들과 해당 장소 사진을 보며, 지켜야 할 안전 규칙들을 사전에 나누는 후,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려 함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계획

-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려 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실시 계획

- 학교 안전취약시설 정기점검 실시, 학생·교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교육 실시, 가정 내 자율 안전점검 홍보 안내 등 학교구성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하기
- 「재난안전법」에 따라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하기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학생 안전교육 연간 계획

7대표준	안전교육 실시현황 (예정)					
	1학기		2학기		계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시간	횟수
생활안전	9	9	4	4	13	13
교통안전	3	3	7	7	10	10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4	4	4	4	8	8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2	2	8	8	10	10
재난안전	2	2	4	4	6	6
직업안전	1	1	1	1	2	2
응급처치	1	1	1	1	2	2

관련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3조

🔍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3년)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8	5	13	5	1	6	46%

※ 2023년은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3주기(2021~2023) 중 마지막 해에 해당함

관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고시 제4조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예정(2023년)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예정 인원 수(명)				실시 예정 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60	8	5	13	60	8	5	13	100	100

관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학교 자체계획 수립 여부(2023년)

수립	미수립
○	

관련

-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거한 자로써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을 교육활동참여자로 정하고 있음
- 학교 자체계획(1회 / 1시간 이상 실시) 수립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법령 의무 안전연수 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1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학 생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등
학 교	사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사·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통지서 접수
학 생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치료
학 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및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schoolsafe.or.kr - (학 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지역 공제회 및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시 진단서·등본 추가
사·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통보
학부모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배상책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3 학교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2-2600-5926,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지하1층)

PC 및 스마트폰 청구가능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공제급여 청구절차

01 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schoolsafe.or.kr>)에 접속

02 화면에서 청구서 작성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바로 작성 (프린트할 필요 없음)

03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도 (우편발송 없이) 바로 PC나 모바일로 업로드

04 심사 및 지급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schoolsafe.or.kr>) 접속
- 공제급여 청구 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구서 작성시 각종 구비서류(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를 이미지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 다양한 환경(IE, Chrome, Safari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을 이용해 공제급여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 사용자 통계 기능도 강화했어요!

문자 및 숫자로만 표현되던 통계를 이젠 시각화된 그래프 형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내용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곳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4. 실종, 유괴, 미야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3. 어른과 손잡고 걸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 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 폰 등) 등의 중독 위험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3. 손씻기와 소득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야사고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알기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4.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실습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야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4.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아동학대 포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고 등 학 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 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의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 개정 취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상해 발생으로 치료 중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

□ 주요 내용

- (안전공제 대상 확대)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이 추가되도록 규정
 -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만 안전공제 가입 가능
- (치료 중 간병료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치료 완료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공제급여 지급제한 상향 입법)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
 - * [대법원 판결내용] 학교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2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규정 (기왕증, 과실상계)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

□ 기대 효과

-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36조(요양급여)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u>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u></p>	<p>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u></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④ ----- -----<u>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p>
<p><신설></p>	<p>2.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p>
<p><신설></p>	<p>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p>
<p><신설></p>	<p>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 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요양급여</u>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 제5항----- ----- <u>요양급여 및 부대경비</u>----- ----- -----.</p>
<p>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략)</p>	<p>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② (생략)</p> <p><u><신설></u></p>	<p><u>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u></p> <p><u>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u></p> <p><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p> <p><u>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 부 칙 ></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